#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51

발의연월일: 2024. 9. 20.

발 의 자:정희용·김선교·김종양

서천호 • 이종배 • 최수진

이인선 • 박준태 • 백종헌

김성원 · 김형동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육시설의 폐쇄나 사육 제한은 가축의 도축장 출하 등 처분이 곤란한 경우 장기간 행정명령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 처분 완료 후 가축을 재입식 하고 사육하여 출하하기까지의 경영 정상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농가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 개월 이내의 가축사육 제한 조치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 소유자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처 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 법률 제 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과징금 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에 게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가축사육 제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치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축산업 발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 및 사육규모·매출액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9조의3(과징금 처분) ① 시장
	·군수·구청장은 가축의 소유
	자등에게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
	월 이내의 가축사육 제한 조치
	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치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
	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처분에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
	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
	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

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과 가산금 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축산업 발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 과하는 대상 및 사육규모·매 출액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